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5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이종욱 · 박성민 · 우재준
김은혜 · 김 건 · 조승환
한지아 · 송언석 · 조지연
배준영 · 안상훈 · 안철수
김상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굴·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 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8조제1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산물부산물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물부산물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수산물부산물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이 경우 수산물부산물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부산물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물부산물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부산물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물부산물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수산물부산물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공동집하장 등 수산물부산물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수산물부산물물의 수거·운반 등
<신설>	

② (생 략)	<u>수산물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u> <u>고용에 드는 비용</u> ② (현행과 같음)
---------	---